심사경과보고서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호
심사일자	2026. 10. 15.

위원장 전 정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42 (우편번호 05584) / Tel : (02)2147-3600 / Fax : (02)2147-3956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경 과 보 고 서

의안번호	26

2026년 10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10. 2. 송파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6. 10. 7.

다. 상정일자: 2026. 10. 15. 제335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김선희 책박물관장)

가. 제안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에 근거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마련'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에 '도서 재활용 방안'을 명시하고, 박물관운영위원회 관련 내용을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박물관 장서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박물관운영위원회 자문규정 정비(안 제15조)

- 장서의 제적·폐기시 운영위원회 자문

○ 박물관 장서의 제적·폐기 규정 정비(안 제43조)

- 제적·폐기 도서의 기관·단체 대상 무상배부 등 도서 재활용 방안 명시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3조,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사전협의: 기획예산과(규제사전심사),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여성보육과(성별영향평가)

○ 기　　타

1) 개정문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별첨

2) 입법예고: 2026. 9. 9. ~ 9. 29. (20일간)

3) 심사대상 규제사무: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손지훈)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6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송파책박물관이 보유·관리하는 장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서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적·폐기되는 자료를 기관·단체 등에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안 제2조제11호**는 “장서”를 일반도서, 연속간행물,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및 기타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으로 정의하면서 학예사가 수집하거나 관리하는 유물자료는 제외하고,

- **안 제15조**는 현행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박물관 장서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 **안 제43조**는 자료의 상호 교환·이관·폐기·제적의 기준과 범위를 「도서관법 시행령」 및 송파책박물관 장서관리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제43조제3항**에서는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 단체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다만, 하나의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제15조에서는 자문기관, 제43조에서는 심의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문 간 기능과 권한의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책박물관 장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공문화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개정 취지는 인정되나, 운영위원회의 자문과 심의 기능의 관계 등 일부 문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을 **검토 보고**드림.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이승희 위원

○ 운영위원회가 자문 기능을 하는지, 심의 기능을 하는지 설명 요구

【답변】 김선희 책박물관장

○ 송파책박물관이 박물관이긴 하지만, 책박물관이다보니 도서자료가 많은 상황임. 도서가 많이 쌓이다보니 관리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도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진행한 바 있으며,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책박물관의 장서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오고 있었음.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도서관에서 자료의 100분의 7 이상을 초과하여 제적·폐기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 이 부분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게 되었음. 기본적으로 책박물관 운영위원회는 자문 기능의 위원회임. 내용적으로 상충되어 보이지만, 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자문의 기능이므로, 심의를 하지만 그 성격은 자문으로 봐주시길 바람.

【질의】 이원우 위원

○ 무상배포에 대하여 중앙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요구

【답변】 김선희 책박물관장

○ 선관위의 해석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무상 배포했을 때,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명확하게 조례에 근거하여 배부하라는 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어 송파책박물관 조례에도 이와 같은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질의】 박지효 위원

○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개인을 포함하여 자원을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제43조에서 무상배포의 대상을 기관과 단체로만 한정한 사유는?

【답변】 김선희 책박물관장

○ 책박물관은 도서관은 아니다보니, 개인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것은 인력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사립작은도서관이나 새마을문고 등에 배포할 예정임.

【질의】 조용근 위원

○ 소장 자료 중 훼손 자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 제43조제3항에서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를 무상배포한다고 되어있는데, 폐기하는 자료를 단체에 배포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 요구.

○ 훼손된 자료라 하더라도, 박물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훼손된 것까지도 보존·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던 자료가 훼손, 파손될 수 있다면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 김선희 책박물관장

○ 포괄적으로 조금 파손된 것, 완전히 훼손된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다만, 제적·폐기할 자료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 등을 무상 배포하고자 하는 것임.

○ 훼손된 자료를 폐기한다는 것은 일반 도서에 한정된 사항임.

○ 유물자료가 아닌 일반 도서는 일반인들이 열람하다보면 훼손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질의】 정성일 위원

○ 운영위원회에 자문 기능과 심의 기능이 동시에 있다는 것은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명확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음.

【답변】 김선희 책박물관장

○ ‘심의를 거쳐’라는 표현은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제적·폐기 등에 대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임.

5. 심사결과: 보류 (간담회 결과,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